



최근 언론소송 판례의 흐름 피고 언론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중심으로

권경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 여는 글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민주주의 체제의 유지·발전에 기여하므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우리 사회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불가결하고 본질적인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언론보도는 그 대상의 명예 등을 침해하게 되어 언론의 자유와 타인의 인격권 사이의 대립을 피할 수 없는바, 이를 규제·조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인 언론소송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그로 인하여 침해를 당하거나 당할 염려가 있는 인격권 등 사이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핵심과제가 된다.

법원은 언론소송에 있어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의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내지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표현에 대한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는 것을 기본적인 입장으로 하면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1)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참조

초상권 침해 등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인정요건²⁾, 불법행위책임의 면책사유인 위법성조각사유의 인정요건 및 정치, 종교, 언론에 대한 비판 등 특수영역에서 면책요건을 완화하는 기준, 정정보도청구 등 새로운 구제수단의 인정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정립하여 왔다.

특히 명예훼손과 관련된 언론소송에서 피고 지위에 있는 언론사가 주로 내세우는 주장·항변은 언론보도에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것과, 보도 내용이 진실임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 등이다. 최근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기한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청구가 증가하면서 언론중재법상 위 청구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피고 지위에 있는 언론사의 위와 같은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내용을 중심으로,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사이에 확정된 명예훼손 관련 언론소송 판례의 흐름을 살펴본다.

II. 당사자 관련 문제

1. 피해자의 특정

가. 문제의 소재

언론보도가 피해자의 명예 또는 기타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려면 그 보도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바, 대상자를 이니셜로 지칭하거나 익명보도를 한 경우에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나. 관련 법리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본다.³⁾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보도 자체만 보아서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더라도, 해당 보도가 다루고 있는 사실관계를 아는 사람들로서는 그 보도가 누구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다수여서, 대부분 언론보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판례 중 피해자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이 심급별로 달라진 사안이 있어 소개한다.

2) 표현행위로 인한 위법한 인격권 침해의 발생, 표현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표현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이 문제되고, 특히 명예훼손책임의 경우 피해자의 특정, 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나 가치의 저하가능성, 적시사실의 허위성 등이 문제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다. 최근 판례 소개⁴⁾

1) 사실관계

피고 A 언론사는 “최근 수도권 여당 C의원실에서 유부남 보좌관이 미혼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여비서는 그만됐고, 보좌관은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게재하였고, 피고 B 언론사는 “지난 6월 초엔 수도권 S의원실의 유부남 보좌관이 미혼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소문이 의원회관에 퍼졌다. 여비서는 그만됐고, 보좌관은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해명했다는 후문”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위 각 기사의 ‘유부남 보좌관’인 원고는 해당 보도가 허위라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제1심 : 피해자 특정 부정

△위 각 기사는 국회 내에 여러 건의 성추문 관련 소문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서,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여러 소문 중 하나에 불과한 점, △소문들을 나열하면서 당사자들의 이름을 영문자로 익명화하여 보도하고 있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보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수도권 여당 C의원실의 유부남 보좌관’, ‘수도권 S의원실의 유부남 보좌관’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점, △기자도 소문의 당사자를 알지 못한 채 기사를 작성·보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다.

나) 항소심 및 상고심 : 피해자 특정 인정

△위 각 기사에는 원고 및 여비서의 직업과 소속이 특정되어 있는 점, △국회 근무자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 특히 수도권 여당 국회의원실 직원들은 기사 보도 무렵 국회의원실에서 그만둔 유일한 여비서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었고, 그 여비서와 같은 의원실에 근무한 ‘유부남 보좌관’이 결국 원고를 가리킨다는 사정도 알아차릴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⁵⁾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3가합91837 판결(원고 패),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5296 판결(원고 일부 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상고기각, 확정)

5) 나아가 위 사건에서 원고가 성희롱으로 인식될 수 있는 얘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성희롱에 관하여 ‘성폭행’을 암시하는 것은 정황의 과장을 넘어선 사실관계 왜곡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의 적시도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2. 정정보도청구 등의 상대방 해당 여부

가. 문제의 소재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 등의 상대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언론중재법 제14조 내지 제17조는 정정보도청구 등의 상대방을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 등’이라 한다)”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정정보도청구사건의 피고가 언론중재법상 ‘언론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정보도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는바, 그 판단기준이 문제된다.

나.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 등의 상대방인 ‘언론사 등의 의미

언론중재법 제2조 각호의 정의에 비추어 보면 언론중재법 제14조 내지 제17조 소정의 ‘언론사 등’이란,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의미한다.

다. 최근 판례 소개

1) '언론사 등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A 방송사와 사이에 뉴스 홈페이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기사를 게재한 B 주식 회사를 정정보도청구의 상대방으로 삼은 사건⁶⁾에서, △B는 A 방송사 뉴스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 점, △B와 A 방송사 사이의 뉴스 홈페이지 위탁운영계약 내용에 의하더라도 B가 게시물을 수정·삭제하는 등의 관리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포털사이트와 사이에 A 방송사 뉴스기사, 동영상 등에 관한 정보제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B가 A 방송사 뉴스기사 등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고 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설령 B가 A 방송사의 허락 등이 없으면 기사를 정정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B와 A 방송사 사이의 내부적 문제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도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또한 C 방송사와 사이에 콘텐츠 유통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사를 게재한 D 주식 회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구한 사건⁷⁾에서, △유통대행계약자에 불과하여 기사를 정정할 권한이 없다는 D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러하더라도 이는 C 방송사와 D 사이의 내부적 문제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2) '언론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 전국언론노동조합에 소속된 B방송사(원고) 노조본부 대표인 피고 A가 'B방송사의 이사장이 공금을 유용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긴 노보를 발행하자, 원고 방송사가 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을 구하면서 전국언론노동조합도 피고로 삼은 사건⁸⁾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위 노보의 발행이나 해당 기사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노보 발행의 직접 행위자가 아닌 전국언론노동조합으로서는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할 방법이 없는 점,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조합원 내지 하부기관에 불과한 피고 A가 발행한 노보를 위 조합이 직접 발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위 노보를 발행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7가합568847, 2018가합523377(병합) 판결(원고 일부 승, 확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가합530781 판결(원고 일부 승), 서울고등법원 2019. 1. 18. 선고 2018나2048121 판결(항소기각, 확정)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가합6709 판결(원고 일부 승), 서울고등법원 2017. 11. 3. 선고 2016나2071745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2018. 2. 28. 2017다287266 판결(심리불속행기각, 확정)

나) C 방송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해당 기사를 게재한 D 주식회사를 정정보도청구의 상대방으로 삼은 사건⁹⁾에서, △D는 C 방송사의 홈페이지를 기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불과할 뿐 콘텐츠를 취재 및 제작하거나 그 내용을 검토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D가 해당 기사의 제작, 보도 및 게시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D가 정정보도를 게시할 권한을 가진 주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D는 정정보도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III. 사실적시 관련 문제

1. 사실의 적시와 의견·논평의 구분

가. 문제의 소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¹⁰⁾,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청구도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해당 기사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여야 하며, 사실의 적시가 없는 순수한 의견·논평으로 인하여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명예훼손책임의 존부를 따지는 데 중요한 쟁점이다.

나. 관련 법리

언론매체의 기사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지, 또는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근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 아니라,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¹¹⁾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5가합542384 판결(원고 패, 확정)

10)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11)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등 참조



다. 최근 판례 소개¹²⁾

1) 사실관계

피고는 '중북·주사파', '중북파의 성골쫄 되는 인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전 국회의원인 원고 A, 원고 A의 남편이자 변호사인 원고 B를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 계정에 작성·게시하였다.

2) 판단

가) 제1심 및 항소심 : 사실의 적시 인정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주사파'로 지목되거나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중북'으로 지목될 경우, 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이라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를 갖게 되어, 그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상고심 : 의견의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 '중북'이라는 표현 등은 '반국가·반사회 세력'이라는 의미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¹²⁾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2가합34257 판결(원고 일부 승), 서울고등법원 2014. 8. 8. 선고 2013나38444 판결(항소기각),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판결(파기환송). 위 판결은 파기환송심 심리가 진행 중이므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또한 '사실적시인지 의견표명인지 여부의 판단기준'과 더불어, '공적 인물이 명예훼손의 피해자인 경우 완화되어 적용되는 위법성 심사기준'이 주된 쟁점이 된 사건이다.

사람들,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 △ '중북'이라는 말은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용어 자체가 갖는 개념과 포함하는 범위도 변하는 것이어서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 △ '주사파'라는 용어는 원고들이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다.¹³⁾

2. 제목에 의한 사실적시

가. 문제의 소재

언론보도를 통한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기준 중 하나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다. 그런데 기사의 제목은 그 자체로 강한 인상을 주므로, 제목이 본문의 내용과 다른 인상을 줄 경우 제목에 의한 사실적시를 별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나. 관련 법리

신문기사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이므로, 신문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만을 따로 떼어 본문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¹⁴⁾

다. 최근 판례 소개

[사례 1 - 아동역사서 표절 사건]¹⁵⁾

1) 사실관계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인 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회사에서 어린이용 역사책(이하 '이 사건

¹³⁾ 이에 대하여, 피고가 주사파 등의 표현을 사용한 맥락과 글 전체의 취지를 보면, 원고들이 북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인정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¹⁴⁾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참조

¹⁵⁾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가합100578 판결(원고 일부 승), 서울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6나2048271 판결(원고 패), 대법원 2017. 12. 7. 2017다261325 판결(심리불속행기각, 확정)

서적'이라 한다)을 출판하자, B는 이 사건 서적이 자신이 저술한 어린이용 역사책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원고 회사 및 이 사건 서적 저자들을 상대로 저작권침해정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저작권침해를 일부 인정하였다.

이에 피고 언론사는 '이번에는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이 아동역사서를 표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2) 판단

가) 제1심 : 제목 통한 사실적시 인정

△위 기사의 제목은 마치 원고 회사가 아닌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인 원고 A'가 개인적으로 표절행위를 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점, △ '표절'이라는 용어는 주로 고의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쓰이는 점, △인터넷신문의 독자는 제목을 클릭함으로써 기사 본문에 접속하게 되므로, 제목에서 받는 선입견이 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제목을 통한 사실적시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항소심 및 상고심 : 제목 통한 사실적시 부정

△위 기사의 제목은 원고 A가 표절하였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의문문을 사용함으로써 표절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 △위 기사 본문에서는 저작권 침해의 주체가 원고 A가 아닌 원고 회사임을 여러 차례에 걸쳐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점, △ 위 기사 제목에서 사용된 '표절'이라는 단어는 사실관계를 압축·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사용된 수사적 과장에 불과한 점, △위 기사는 저작권침해의 책임이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 A에게도 일정 부분 있다는 내용으로 읽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였을 때 '원고 A가 고의적으로 기존 서적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사례 2 - 4각 커넥션 사건] ¹⁶⁾

1) 사실관계

원고는 'A'라는 명칭의 기관지를 발행하는 사단법인인데, 피고 언론사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4각 커넥션 드러나냐'라는 제목으로 B와 전경련, 청와대, 국정원의 4각 커넥션 관계에 대하여 보도한 뒤, 그 보도 내용을 온라인으로 기사화하면서 기사의 제목을 'A-전경련-청와대-국정원...4각 커넥션 드러나냐'로 기재하였다.

¹⁶⁾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가합1779 판결(원고 패), 서울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나2010761 판결(원고 일부 승, 확정)

2) 판단

가) 제1심 : 제목 통한 사실적시 부정

△이 사건 보도에서는 B와 전경련, 청와대, 국정원의 4각 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을 뿐인 점, △위 기사의 제목을 제외하고는 보도 전체에 걸쳐 원고나 A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사는 B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목만 'B'를 'A'로 단순오기한 것에 불과함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나) 항소심 : 제목 통한 사실적시 인정

△위 기사의 제목과 달리 기사 본문에 A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므로, 위 제목은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이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 언론사가 위 기사 보도 이전에 'A와 B의 관계, A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의 문제' 등을 지정한 보도를 한 상태였으므로,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기사를 접하고 원고와 전경련, 청와대, 국정원 사이의 4각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이해할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목 자체로 허위사실의 적시가 인정된다고 보았다.¹⁷⁾

3. 문언 이외의 방법에 의한 사실적시

가. 문제의 소재

신문 외에도 TV, 라디오, 인터넷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문언 이외의 방법으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보도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언에 의한 직접적인 설시가 없더라도 명예훼손책임의 전제가 되는 사실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나. 관련 법리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¹⁸⁾

¹⁷⁾ 따라서 원고의 기사제목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언론사 및 편집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일부 인용하면서, 다만 취재기자의 경우 제목 선정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¹⁸⁾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등 참조



다. 최근 판례 소개

아래와 같이 문언이 아닌 영상, 편집권의 행사, 생방송 인터뷰 등에 의한 사실적시 여부가 문제된 사례들이 있어 소개한다.

1) 영상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사례¹⁹⁾

피고 언론사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국무총리가 사드배치 지역으로 지정된 성주를 방문한 현장을 보여주며 ‘낮익은 진보단체, 또 등장’이라는 표제 옆에 원고 A의 사진과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내고, ‘A, 시민단체 시위 주도?’등의 자막을 배치하였다.

법원은 원고 A가 위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언론사가 위와 같은 영상과 자막을 통하여 원고 A가 해당 시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표현들을 반복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비교 판례로 피고 언론사가 ‘유병언의 측근으로 꼽히고 있는 A가 유병언 일가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A의 검찰 출두 당시 같은 차를 타고 온 원고들이 A를 따라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그대로 내보낸 사안에서,

¹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6가단5289268 판결(원고 일부 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나470634 판결(항소기각, 확정)

원고들이 A와 함께 걸어가거나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²⁰⁾

2) 편집권 행사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례²¹⁾

피고 언론사는 방송인 A의 어머니인 원고와 A가 함께 여행을 하며 있었던 일들을 촬영한 뒤 편집을 거쳐 방송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언론사가 원고가 A를 버린 후 돈을 목적으로 다시 A에게 접근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촬영된 원본을 적절한 분량으로 편집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편집의 자유는 편집권자에게 있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 방송 촬영 전 원고와의 사전 인터뷰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A 사이의 갈등의 표현은 방송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여 이를 내보낸 것도 적절한 편집권 행사 범위 내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은 모두 원고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어서 원고도 방송 내용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잘못된 편집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생방송 인터뷰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사례²²⁾

생방송 출연자가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한 경우, 언론사는 일반적인 공동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하여 위와 같은 발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예상·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그 발언을 사실상 유도하거나 동조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거나 책임을 면하여 왔다.²³⁾

원고 언론사가 대만식 대왕카스텔라에 대하여 비판적인 내용의 TV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는데, 피고 언론사는 라디오 방송에서 대왕카스텔라 업주와의 인터뷰를 통해 원고 언론사의 위 TV 프로그램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방송한 사안에서, 법원은 △방송사는 출연자와 방송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조율을 하여 허위보도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개입을 해야하는 점, △피고 언론사는 원고 언론사의 프로그램을 비판할 목적을 가지고, 라디오 방송에서 원고 언론사의 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업주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즉시성’이라는 생방송 인터뷰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 언론사의 명예훼손책임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가합101939(원고 일부 승),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2088859(원고 패, 확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합539757 판결(원고 패, 확정)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가합107637 판결(원고 일부 승, 항소심 조정 성립으로 확정)

23) 장태영 (2018). 언론의 자유와 자율성 보장을 위한 사법의 노력과 제언. <2018년 언론과 사법 심포지엄>, 11~1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가합537426 판결에서는 언론사의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가합586479 판결에서는 언론사의 책임이 부정되었다.

IV. 위법성조각사유 중 상당성 요건 관련 문제

1. 문제의 소재

언론소송에서 위법성조각을 항변사유로 내세우는 표현행위자는 ① 표현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②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다거나, ③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²⁴⁾ 공공성 요건의 경우 그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²⁵⁾ 대다수의 언론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진실성 요건의 경우 대부분 기사 내용이 진실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기란 극히 어려우므로, 결국 상당성 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판단에서 주요쟁점이 되고 있다.

2. 관련 법리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²⁶⁾

3. 최근 판례 소개

[사례 1 – 군인 강제추행 사건]

가. 사실관계

피고 언론사들은 군인인 원고가 클럽에서 외국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원고는 군사법원에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하여 강제추행을 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

²⁴⁾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²⁵⁾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조

²⁶⁾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60971 판결 등 참조



유로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되자 피고 언론사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의 피고 언론사들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지만, 아래와 같이 일부 피고들은 위법성조각 사유의 상당성이 인정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은 상당성이 부정되었다.

1) 상당성이 인정된 경우²⁷⁾

△해당 기사는 유죄를 암시하거나 그러한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객관적인 수사진행 상황을 부가함으로써 원고의 혐의가 수사 중인 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시한 점, △해당 기사는 원고의 성과 나이, 출신과 직업을 표시하였으나, 범죄사건 보도의 경우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범인에 관한 정보 등도 범죄사건 보도에 필요한 요소로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될 수 있고, 해당 기사의 내용은 보도목적 및 공익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정보제공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언론사 소속 기자는 타 언론사의 선행 보

²⁷⁾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7가합109176 판결(원고 패, 확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가합36574 판결(원고 패, 확정)

도를 접하고 해당 수사기관이나 군에 사실확인을 거친 후 해당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2) 상당성이 부정된 경우²⁸⁾

한편 일부 언론사들의 경우, △단순히 ‘원고가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사건의 경과를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원고가 피해 여성을 실제로 성추행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사를 통해 강하게 암시한 점, △해당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기에 앞서 군 검찰의 기소 여부 등 범죄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타 언론사로부터 기사를 제공받아 전재하는 것임을 명시한 피고의 경우에도, 위 기사의 내용은 사건의 경과만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초기단계에서 원고의 범행을 단정짓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사를 전재하는 경우까지 피고의 사실확인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해당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사례 2 – 성범죄 대리합의 지시 사건]²⁹⁾

가. 사실관계

피고 언론사들은 ‘군인인 원고가 부하직급 군인 A에게 B의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B의 누나인 척 하고 대리합의를 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A가 이를 거부하자 A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고, 원고는 위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역시 피고 언론사들은 같은 내용을 보도한 것이지만, 아래와 같이 일부 피고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상당성이 인정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은 상당성이 부정되었다.

1) 상당성이 인정된 경우

일부 피고 언론사들의 경우, △위 피고들의 기사 내용 중 ‘대리합의를 지시하였다는 부분’은 A의

²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가합544940 판결(원고 패),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나2006233 판결(원고 일부 승,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가합555421 판결(원고 일부 승),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나2007960 판결(원고 일부 승,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가합546519 판결(원고 일부 승),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나2007953 판결(원고 일부 승,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가합555438 판결(원고 일부 승), 서울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2035804 판결(항소기각,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7가합555445 판결(원고 일부 승), 서울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2038025 판결(항소기각, 확정)

²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7가합568847, 2018가합523377(병합) 판결(원고 일부 승, 확정)

진술이나 국방부 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피고들은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는 부분'도 A의 주장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밝히고, 위 의혹이 진실이라는 인상을 주는 단정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한 점, △해당 기사에 원고 측 반론사항도 반영하여 보도한 점 등을 이유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2) 상당성이 부정된 경우

반면 나머지 피고 언론사들의 경우, △최초 보도인 연합뉴스의 기사 내용에만 의존하여 기사를 작성하면서 연합뉴스 기사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A가 제출한 진정서나 고소장 등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럼에도 이를 직접 취재한 것처럼 각 기사를 작성한 점, △특히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는 보도 내용 중 '201X년 두 차례의 근무평정에서 모두 열등평정을 주었다는 것'은 A의 진정서나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구체적인 횟수나 시기를 특정하며 마치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A의 주장을 보도하면서 그 사례로 위 대리합의 거부 사건과의 관련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 인사조치 부분까지 적시하여 A의 주장을 단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점, △대리합의 지시 의혹이 있었던 시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들이 관련자들 내지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각 해당 기사를 보도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의견이나 군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원고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V. 닫는 글 - 최근 판례의 흐름

1. 앞서 살펴본 최근의 판례들은 대부분 언론소송의 주요쟁점에 관한 기존의 법리를 따르면서 해당 사건에서 인정된 구체적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결론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 가. 피해자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례의 경우, 기사 내용 및 보도 당시의 정황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지인·주변인이 해당 보도가 피해자에 관한 것임을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를 검토하였는바, 지인들이 해당 보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명예훼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그 피해에 대한 구제를 인정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나. 정정보도청구 등의 상대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가 된 회사와 방송사가 체결한 홈페이지 운영계약의 실질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가 해당 기사의 작성·게재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피고가 해당 기사의 삭제나 정정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결과 사안별로 피고의 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지고 있다. 정정보도청구 등의 상대방인 '언론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언




론중재법에서 ‘언론사 등’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 문제된 사건에서 인정되는 여러 사실들에 비추어 해당 피고의 실질을 ‘언론사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면 될 것이다.

다. 명예훼손의 사실적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기존의 법리에서 제시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제목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내용과 취지, 해당 기사가 작성된 경위와 목적, 보도 당시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특히 문언에 의한 사실적시 없이 영상이나 인터뷰 등에 의하여 표현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프로그램의 성격상 의견·논평의 전달보다는 사실보도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문제가 된 방송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명예훼손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표현의 형식이나 수단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해당 표현에 의하여 실제 명예훼손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책임을 인정하려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라. 끝으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상당성 요건에 관한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면, 같은 사건을 보도한 기사들에 대하여도 각 언론사별 취재 경위나 보도 태도, 기사에서 사용한 어휘와 표현의 방법, 보도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반론권 보장 여부 등에 따라 위법성조각사유의 상당성이 인정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흐름은 위법성조각사유의 판단기준에 대한 기존 법리를 유지하면서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심리가 이루어진 결과이며, 또한 기사 작성시 명예훼손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기울이는 언론사가 늘어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법원이 명예훼손책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살펴보면, '보도 당시'를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사실이 무엇이었는지, 취할 수 있었던 조치들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고, 보도 이후의 사정은 특별한 경우³⁰⁾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언론사가 기사 작성 및 게재시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보도하였는데 그 후에 확인된 사정 때문에 비로소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경우까지 언론사에 그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판단기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 통신기술의 발달 및 언론매체의 다변화, 거대화, 광역화 등 언론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 형태가 복잡하고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피해는 매우 빠르고 넓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고(피해의 신속성·광역성·치명성)³¹⁾, 이를 반영하여 언론소송에서의 이해관계 대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언론소송 판례의 흐름은 △표현행위에 의하여 실제 명예훼손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피해자의 특정, 사실의 적시 등 명예훼손책임의 인정요건을 판단함으로써 언론보도에 의해 침해되는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면서, △한편 언론사가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기의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를 충실하고 세밀하게 심리하여 위법성조각사유의 상당성 요건을 판단함으로써 명예훼손책임으로 인하여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언론소송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실질적인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0)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진실한 사실인지,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유무를 가릴 수 있으므로, 표현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위 판례 역시 진실성이나 상당성을 밝힐 증거자료의 수집 시기를 보도 당시로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일 뿐, 명예훼손책임 인정 여부는 표현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31) 윤경 (2003). 언론피해 구제수단으로서의 언론소송. <언론중재>, 통권89호, 80-85.